|  |  |  |
| --- | --- | --- |
|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  재세[2011] 111호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중점개발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업무 방안》에 의거하여,《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실시방법》,《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과《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 과도정책에 대한 규정》을 제정, 이에 공포하는 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해시 각 관련 부문은 시범 요구에 따라 시범업무를 조직하여 시범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첨부1: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실시방법  첨부2: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첨부3: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 과도정책에 대한 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1월 16일  첨부1: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 실시방법**  **제1장 납세인과 원천징수의무자**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서비스(이하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의 납세인이다. 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단위는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킨다.  개인은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가리킨다.  **제2조** 단위가 도급, 임차, 예속방식으로 경영하는 경우, 도급인, 임차인, 예속인(이하 “도급인”) 발주인, 임대인, 피예속인(이하 “발주인”)명의로 대외경영하고, 발주인이 관련 법률책임을 질 경우, 해당 발주인을 납세인으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급인을 납세인으로 한다.  **제3조** 납세인은 일반납세인과 소규모납세인으로 나눈다.  과세대상서비스의 연간 증치세과세대상판매액(이하 “과세대상서비스 연간판매액”)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는 납세인은 일반납세인으로 하며, 규정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인은 소규모납세인으로 한다.  과세대상서비스 연간판매액이 규정표준을 초과하는 기타 개인은 일반납세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기업성단위, 과세대상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과 개체공상호는 소규모납세인에 따라 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제4조** 소규모납세인이 회계결산을 완벽히 하고, 세무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일반납세인 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일반납세인이 될 수 있다.  회계결산을 완벽히 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장부를 배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일반납세인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일반납세인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정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 경우 외에 일단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후에는 소규모납세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이하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을 증치세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서비스 수혜자를 증치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제7조** 둘 또는 둘 이상의 납세인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하나의 납세인으로 간주하여 통합하여 납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2장 과세대상서비스**  **제8조** 과세대상서비스는 육로운송서비스, 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아이디어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 유체동산임대서비스, 검증자문서비스를 말한다.  과세대상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 방법에 첨부된《과세대상서비스 범위주석》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9조**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은 유상으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란 화폐, 화물 또는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비영업활동 중 제공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서비스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비영업활동은 다음을 가리킨다.  (1) 비기업성단위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행정관리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성기금 또는 행정사업성 비용을 수취하는 활동.  (2) 단위 또는 개체공상호가 채용한 직원이 본 단위 또는 고용주를 위해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단위 또는 개체공상호가 직원을 위해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10조** 경내에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측 또는 서비스 수혜 측이 경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아래 열거된 상황은 경내에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1)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하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사용하는 유체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3)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11조** 아래 열거된 개인과 개체공상호의 상황은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기타단위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단, 공익활동을 위한 목적 또는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기타 상황.  **제3장 세율과 징수율**  **제12조** 증치세 세율  (1) 유체동산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율은 17%이다.  (2) 교통운수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율은 11%이다.  (3) 현대서비서업 서비스(유체동산 임대서비스 제외)를 제공할 경우, 세율은 6%이다.  (4)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과세대상서비스는 영세율이다.  **제13조** 증체세 징수율은 3%이다.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일반규정**  **제14조** 증치세의 세액계산방법은 일반세액계산방법과 간이세액계산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계산한다.  일반납세인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특정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세액계산할 수 있다. 단, 한번 선택한 경우, 36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소규모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계산한다.  **제17조**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내에 경영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 공식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납부세액 = 서비스수혜자가 지급하는 세금÷(1+세율) X 세율  **제2절 일반세액계산방법**  **제18조** 일반세액계산방법의 납부세액이란 당기매출세액에서 당기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납부세액의 계산방식  납부세액=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  당기매출세액이 당기매입세액보다 낮아 공제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은 차기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매출액이란 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액과 증치세 세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을 말한다.  매출액 계산 공식  매출액= 판매액X세율  **제20조** 일반세액계산방법의 판매액은 매출세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납세인이 판매액과 매출세액을 통합하여 정가방법(定价方法)을 사용할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판매액을 계산한다.  판매액 = 세금을 포함한 판매액÷(1+세율)  **제21조** 매입세액이란 납세인이 화물을 구입하거나, 가공수리, 정비 용역과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받아 지불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 세액을 말한다.  **제22조** 아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으로부터의 공제를 허가한다.  (1) 판매측 또는 공급측으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상에 명기된 증치세액.  (2)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세관수입 증치세 전용 납세신고서 상에 명기된 증치세액.  (3) 농산품 구매 시 취득한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세신고서를 제외하고는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판매 세금계산서 상에 명시된 농산품 매입가격과 13%의 공제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계산공식  매입세액= 매입가X공제율  매입가란 납세인이 농산품을 구매하고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판매 세금계산서 상에 명기된 대금과 규정에 따라 납부한 연초세를 말한다.  (4) 교통운수업 서비스를 받는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운송비용 결산 증빙서류 상 명기된 운송비용 금액과 7%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매입세액 계산공식  매입세액 = 운송비용 금액 X 공제율  운송비용금액이란 운송비용 결산 증빙서류 상에 명기된 운송비용(철도 임시선 및 철도 전용선 운송비용 포함), 건설기금을 말하며, 하역비와 보험료 등 기타 잡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받을 경우, 세무기관 또는 경내 대리인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통용납부서(이하 “통용납부서”) 상에 명시된 증치세액.  **제23조** 납세인이 취득한 증치세 공제증빙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치세 공제증빙이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관 수입 증치세 전용납부서,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농산품 판매 세금계산서, 운송비용 결산 증빙과 통용납부서를 말한다.  납세인이 통용납부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 지불증명과 경외단위의 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24조**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는 세액계산항목, 비증치세 과세대상항목, 증치세 면세 방목, 단체 복리후생 또는 개인이 소비한 매입화물, 가공수리, 정비용역 또는 과세대상서비스. 그 중 고정자산, 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영업권, 상표, 저작권, 유체동산 임대는 상술한 항목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 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유체동산 임대만을 말한다.  (2) 비정상 손실의 매입화물 및 관련된 가공 수리 정비용역과 교통운송업 서비스.  (3) 비정상 손실의 제품, 완제품에 사용된 매입화물(고정자산 불포함), 가공수리, 정비용역 또는 교통운송업 서비스.  (4) 서비스를 받는 여객운송서비스.  (5) 자가사용한 소비세 과세대상의 오토바이, 자동차, 유람선. 단, 교통운송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공구와 임대서비스의 대상물은 제외.  **제25조** 비증치세 과세대상항목이란 비증치세 과세대상 용역, 무형자산(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영업권, 상표, 저작권 제외)양도, 부동산 판매 및 건설중인 부동산을 말한다.  비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란《과세대상서비스 범위 주석》애 열거된 항목 외의 영업세 과세대상 용역을 말한다.  부동산이란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후 성질, 형태가 별하는 재산을 말하며, 건축물, 구축물과 기타 토지부착물을 포함한다.  납세인이 신축, 개축, 확장, 보수, 인테리어하는 부동산은 모두 건설중인 부동산에 속한다.  개인소비는 납세인의 접대비용을 포함한다.  고정자산이란 사용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한 기기, 기계, 운송공구 및 기타 생산경영과 관련된 설비, 공구, 기구 등을 말한다.  비정상손실이란 관리소홀로 도난, 손실, 변질로 인한 손실된 화물 및 법률집행부문이 법률에 따라 몰수하거나 자체 소각을 명령한 화물을 말한다.  **제26조** 일반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한 납세인은 간이세액계산방법 항목, 비증치세 과세대상용역, 증치세 항목 면세를 겸업하여, 이를 구분할 할 방법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당기 구분불가 전체매입세액X (당기 간이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상목 판매액+비증치세 과세대상용역 영업액+증치세 면세항목 판매엑) ÷ (당기 전체 판매액+당시 전체 영업액)  주관세무기관은 상술한 공식에 따라 연도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결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매입화물, 가공수리 정비용역 또는 과세대상서비스가 본 방법 제24조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간이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항목, 비증치세 과세대상용역, 증치세 면세항목 제외)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당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당시 실제 원가에 따라 차감할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제28조** 납세인이 일반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계산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할인으로 인하여 구매측에 반환한 증치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서비스 중지, 매입화물의 퇴출, 할인이 발생하여 증치세액을 회수할 경우,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제29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액과 증치세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도 사용할 수 없다.  (1) 일반납세인이 회계결산을 완벽히 하지 않거나,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3절 간이세액계산방법**  **제30조** 간이세액계산방법의 납부세액이란 판매액과 증치세 징수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 계산공식  납부세액= 판매액 X 징수율  **제31조** 간이세액계산방법의 판매액은 그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북세인이 판매액과 납부세액을 통합하여 정가방법(定价方法)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판매액을 계산한다.  판매액= 세금포함 판매액÷(1+징수율)  **제32조** 납세인이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할인으로 서비스 수혜자에게 환급한 판매액은 당기 판매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당기 판매액 차감 후에도 여전히 잔액이 남아 있어 납부세금이 있을 경우, 향후 납부할 납부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4절 판매액의 확정**  **제33조** 판매액이란 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체 대금과 가격외비용을 말한다.  가격외비용이란 가격외 수취한 각종 성질의 가격외 수취비용을 말한다. 단, 대리수취한 정부성 기금 또는 행정사업성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판매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납세인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판매액을 계산할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환산율은 판매액이 발생한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인민폐 환율의 중간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인은 환산율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며, 확정 후 12개월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납세인이 동일하지 않은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일하지 않은 세율 또는 징수율이 적용되는 판매액을 각각 결산해야 한다. 각각 결산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6조** 납세인이 영업세과세대상항목을 겸업할 경우, 과세대상서비스의 판매액과 영업세 과세대상항목의 영업액을 각각 결산해야 한다. 각각 결산하지 않을경우, 주관세무기관이 과세대상 서비스의 판매액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37조** 납세인이 면세, 감세항목을 겸업할 경우, 면세, 감세 항목의 판매액을 각각 결산해야 한다. 각각 결산하지 않은 경우, 면세, 감세할 수 없다.  **제38조** 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대상서비스를 중지, 할인, 발행오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규정에 따라 마이너스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마이너스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본 방법 제28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세액 또는 판매액을 차감할 수 없다.  **제39조** 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과 할인액을 동일 세금계산서 상에 각각 명기한 경우, 할인 후의 대금을 판매액으로 한다. 동일한 세금계산서 상에 각각 명기하지 않은 경우, 대금을 판매액으로 하며, 할인액을 차감할 수 없다.  **제40조** 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높고, 합리적인 상업 목적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본 방법 제11조에 열거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판매액이 없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아래 순서에 따라 판매액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1) 납세인이 최근에 제공한 동종 과세대상 서비스의 평균 가격에 따라 확정.  (2) 기타 납세인이 최근에 제공한 동종 과세대상 서비스의 평균 가격에 따라 확정.  (3) 조성세액계산 가격에 따른 확정.  조성세액계산가격의 공식  조성세액계산가격= 원가 X (1+원가이윤율)  원가이윤율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제5장 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발생기간과**  **납세장소**  **제41조**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시간  (1) 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 증빙을 요구하여 수취한 당일이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로 한다.  판매대금 수령이란 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또는 완료 후 대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대금의 청구 증빙을 취득한 당일은 서면계약에서 확정한 지급일을 말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서면계약에 지급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서비스를 완료한 당일로 한다.  (2) 납세인이 유체동산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수금방식을 취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기간은 선수금을 수취한 당일로 한다.  (3) 납세인이 본 방법 제11조의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기간은 과세대상 서비스 완료 당일로 한다.  (4)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기간은 납세인의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 당일로 한다.  **제42조** 증치세 납세장소  (1) 고정사업장은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해야 한다. 본점과 분지기구가 동일한 현(시)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각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해야 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과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본점과 통합하여 총기구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할 수 있다.  (2) 비고정사업장은 과세대상서비스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 해야 한다. 신고납세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이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43조** 증치세의 납세기한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개 분기로 나눈다. 납세인의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의 납부할 세액에 근거하여 각각 심사결정한다. 1개 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하는 규정은 소규모납세인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납세인에게 적용한다. 고정기한에 따라 납세할 수 없을 경우, 차수로 납세할 수 있다.  납세인이 1개월 또는 1개 분기를 1개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납세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1개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 만기일로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익월 1일부터 15일 내 신고납세하며, 전월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납부 기한은 2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세수감면**  **제44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에 면세, 감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면세, 감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면세, 감세를 포기한 후 36개월 내에는 면세, 감세를 재 신청할 수 없다.  **제45조** 개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판매액이 증치세 징수점에 미달한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징수점에 해당하는 경우, 증치세를 전액 계산하여 납부한다.  증치세 징수점은 일반납세인으로 인정된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6조** 증치세 징수점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기한에 따라 납부할 경우, 과세대상 판매액은 5,000-20,000위안(본 금액 포함)이다.  (2) 횟수에 따라 납부할 경우, 매 회(일) 판매액은 300-500위안(본 금액 포함)이다.  징수점의 조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과 국가세무국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정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징수점을 적용해야 함,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7장 징수관리**  **제47조** 영업세를 대체한 증치세는 국가세무국이 책임지고 징수한다.  **제48조** 납세인이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한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제49조** 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상에 판매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명기해야 한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1) 소비자 개인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증치세 면제 규정에 적용되는 과세대상 서비스.  **제50조** 소규모 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수혜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리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납세인의 증치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현행 증치세 징수관리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8장 부 칙**  **제52조** 납세인은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에 의거하여 증치세 회계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53조** 본 방법은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 및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외단위와 개인에게 적용한다.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란 기구 소재지의 단위와 개체공상호 및 거주지가 시점지역에 있는 기타 개인을 말한다.  붙임:  **과세대상서비스 범위 주석**  **1. 교통운송업**  교통운송업이란 운송공구를 사용, 화물 또는 여객을 목적지에 운송하여 공간 위치를 이동하는 업무 활동을 말한다. 육로운송서비스, 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와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를 포함한다.  **(1) 육로운송서비스**  육로운송서비스란 육로(지상 또는 지하)를 통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업무 활동을 말하며, 도로운송, 케이블카운송, 리프트운송 및 기타 육로운송을 포함하며, 철도운송은 잠정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2) 수로운송서비스**  수로운송서비스란 강, 하천, 호수, 개천 등 천연, 인공수로 또는 해양항로를 통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업무활동을 말한다.  원양운송의 항해, 기간용 선박업무는 수로운송서비스에 속한다.  항해업무란 원양운송기업이 선박임차인을 위해 특정 운행의 운송업무를 완료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간용 선박업무란 원양운송기업이 업무인원을 갖춘 선박을 타인에게 임차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고, 임차기간 내에 임차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경영여부에 관계없이 1일 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비를 수취하고, 발생한 고정비용은 선주(船东)가 부담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항공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란 공중항로를 통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업무활동을 말한다.  항공운송의 임대업무는 항공운송서비스에 속한다.  임대업무란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 승무인원을 갖추어 비행기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일정기한 사용하고, 임차기간 내에 임차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경영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표준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비를 수취하고, 발생한 고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란 파이프라인 시설을 통해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을 운송하는 운송업무활동을 말한다.  **2. 일부 현대서비스업**  일부 현대서비스업이란 제조업, 문화산업, 현대물류산업 등을 위주로 하여 기술,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아이디어서비스, 유체동산 임대서비스, 검증자문서비스를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란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양도서비스, 기술자문서비스, 계약에너지관리서비스, 공정탐사 서비스업무를 포함한다.  1. 연구개발서비스란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또는 신재료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와 실험개발을 진행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2. 기술양도서비스란 특허 또는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3. 기술자문서비스란 특정기술항목에 대한 가행성 논증, 기술예측, 전문기술조사, 분석평가보고와 전문지식자문 등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합동에너지관리서비스란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위가 계약형식으로 에너지절약을 목표를 약정하고,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에너지사용단위가 에너지절약 효과에 따라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에 투입 및 합리적인 보수를 지불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5. 공정탐사 서비스업무란 채광, 공정시공이전에, 지형, 지질구조, 지하자원 매장현황에 대한 실지조사 업무활동을 말한다.  **(2) 정보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란 컴퓨터와 통신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에 대한 생산, 수집, 처리, 가공, 저장, 운송, 검색 및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서비스, 회로설계 및 테스트서비스, 정보시스템서비스와 업무프로세스 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란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서비스, 소프트웨어 테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행위를 말한다.  2. 회로설계 및 테스트서비스란 집적회로와 전자회로제품 설계, 테스트 및 관련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행위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서비스란 정보시스템 수집, 네트워크 관리, 데스크관리 및 유지, 정보시스템 응용, 기초정보기술관리 플랫폼 통합, 정보기술 기초시설관리, 데이터센터, 신탁관리센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행위를 말한다.  4. 업무프로세스 관리서비스란 컴퓨터정보기술제공을 바탕으로 인력자원관리, 재무경제관리, 금융결제서비스, 내부데이터분석, 고객상담센터와 전자상거래 플래폼 등의 업무활동을 말한다.  **(3) 문화아이디어서비스**  문화아이디어서비스란 설계서비스, 상표저작권양도 서비스, 지식재산권서비스, 광고서비스와 회의전시서비스를 포함한다.  1. 설계서비스란 시각, 문자 등 형식을 통해 계획, 규획, 구상을 전당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공업설계, 조형설계, 의류디자인, 환경설계, 평면설계, 포장디자인, 에니메이션디자인, 전시설계, 웹사이트설계, 기계설계, 공정설계, 아이디어 기획 등을 포함한다.  2. 상표저작권 양도서비스란 상표, 영업권과 저작권을 양도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서비스란 지식재산권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특허,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대리, 등기, 검증, 평가, 인증, 자문,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다.  4. 광고서비스란 도서,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슬라이드, 도로표지판, 포스터, 쇼윈도우, 네온사인, 조명, 인터넷 등 각종 형식을 이용하여 고객을 위해 상품, 경영서비스 항목, 문화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공고, 성명 등 위탁사항을 홍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광고의 기획, 설계, 제작, 발표, 방영, 홍보, 전시 등을 포함한다.  5. 회의전시서비스란 상품유통, 프로모션, 전시, 경제무역협상, 민간교류, 기업교류, 국제거래 등을 위해 각 유형의 전시와 회의를 개최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4) 물류보조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란 항공서비스, 항구부두서비스, 화물/여객운송장소 서비스, 인양구조서비스, 화물운송대리서비스, 대리통관서비스, 창고보관과 하역운반서비스를 포함한다.  1. 항공서비스란 항공지상서비스와 통용항공서비스를 포함한다.  항공지상서비스란 항공회사, 비행장, 민항관리국, 공항 등이 중국 경내에서 운항하거나 중국 경내 공항에 체류하는 경내외 항공기 또는 기타 항공기를 대상으로 네비게이션 등 용역성 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여객안전검사서비스, 비행기 계류장 관리서비스, 공항 라운지관리 서비스, 공항청결소독관리서비스, 공중비행관리서비스, 항공기 이/착륙서비스, 비행통신서비스, 지상 신호서비스, 항공기 안전서비스, 항공기 활주로관리서비스, 공중교통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통용항공서비스란 전문업무를 위해 비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항공촬영, 항공측량, 항공탐사, 항공산림보호, 항공살포, 항공강우 등을 포함한다.  2. 항구부두서비스란 항구선박 배치서비스, 선박통신서비스, 항로관리서비스, 항로준설서비스, 등대관리서비스, 항로표지서비스, 선박인행서비스, 화물검사서비스, 계류/출항서비스, 정박/이동서비스, 해상선박 누유(溢油)제거 서비스, 수상교통관리서비스, 선박전문 청결소독검사서비스, 선박누유방지서비스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3. 화물/여객운송장소 서비스란 화물/여객운송장소(철도운송 불포함)가 제공하는 화물탑재서비스, 운송조직서비스, 중계환승서비스, 차량배치서비스, 티켓서비스와 차량주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4. 인양구조서비스란 선원구조, 선박재산구조, 수상구조와 침몰선, 적재물 인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5. 화물운송대리서비스란 화물 수하인,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직접적으로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 하에, 위탁인을 위해 화물운송 및 관련 업무수속을 대행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6. 대리통관서비스란 수출입 화물의 수하,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통관수속처리를 대행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7. 창고보관서비스란 창고, 화물하치장 또는 기타 장소를 이용하여 고객의 화물 저장과 보관을 대행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8. 하역운반서비스란 하역운반도구 또는 인력, 축력(畜力)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공구 간, 하역현장 간 또는 운송공구와 하역현장 간의 하역과 운반을 진행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5) 유체동산임대서비스**  유체동산임대란 유체동산 금융리스와 유체동산 운용리스를 포함한다.  1. 유체동산 금융리스란 융자성질과 소유권 이전의 특징이 있는 유체동산 임대 업무활동을 말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규격, 사이즈, 성능 등 조건에 근거하여 유형동산을 매입하여 임차인에 임대하고, 계약기간 설비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사용권만 갖는다. 계약만기 후 임대료를 지불완료한 후, 임차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위해 잔존가액에 따라 유형동산을 매입할 권리가 있다. 임대인이 유체동산을 잔존가액에 따라 임차인에게 판매했는지에 대한여부는 상관 없이 금융리스에 속한다.  2. 유체동산 운영리스란 약정된 시간 내에 물품과 설비 등 유형동산을 타인에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물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은 업무활동을 말한다.  원양운송의 나용선(光租)업무, 항공운송의 임대업무는 유체동산 운용리스에 속한다.  나용선업무란 원양운송기업이 약정된 시간 내에 업무수행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각 항목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며, 고정임대비만을 수취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항공기임대업무란 항공운송기업이 약정된 시간 내에 항공기 운항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항공기를 타인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각 항목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며, 고정임대비만을 수취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6) 검증자문서비스**  검증자문서비스는 인증서비스, 검증서비스와 자문서비스를 포함한다.  1. 인증서비스란 전문자격을 갖춘 단위를 이용하여 테스트, 검사, 계량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관련 기술규범, 관리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또는 표준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2. 검증서비스란 전문자격을 갖춘 단위가 위탁인을 위해 결제활동 및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증명력을 갖춘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회계, 세무, 자산평가, 법률, 부동산토지평가, 공정건설비 검증을 포함한다.  3. 자문서비스란 재무, 세수, 법률, 내부관리, 업무운영과 절차관리 등 정보 또는 건의를 제공하거나 기획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첨부2: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시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의 시범 실시방법》(이하 《시범실시방법》)을 관철하고,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의 시범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하기 위해, 시범기간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시범납세인(《시범실시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인) 관련 정책**  (1) 겸업경영  시범납세인이 상이한 세율 또는 징수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용역 또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이한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하는 판매액을 각각 결산해야 하며 판매액을 각각 결산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한다.  1.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용역 또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상이한 징수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용역 또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한다.  3. 상이한 세율과 징수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용역 또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유전/가스전 기업  시범지역의 유전/가스전 기업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범실시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유전/가스전기업 증치세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재세[2009]8호)는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3) 판매액  1. 시범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관련 영업세 정책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징수할 경우, 이미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비용에서, 비시범납세인(시범지역에서 《시범실시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인과 비시범지역 납세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할 수 있다.  시범납세인 중 소규모납세인이 교통운송업서비스와 국제화물운송 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관련 영업세 정책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징수할 경우, 시범납세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이미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범납세인 중 일반납세인이 국제화물운송 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관련 영업세정책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징수할 경우, 시범납세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이미 취득한전체대금과 가격외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시범납세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국가의 관련 영업세 차액과세정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시범납세인이 전체대금과 가격외비용에서 대금을 공제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세무총국의 유관규정에 부합되는 증빙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상술한 증빙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경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단위 또는 개인에게 발생한 행위가 증치세 또는 영업세 징수범위에 속할 경우,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으로 한다.  ② 지급한 행정사업성비용 또는 정부성기금은 발행한 재정증빙을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으로 한다.  ③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의 수취증빙을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으로 하며, 세무기관은 수취증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외 공증기구의 확인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증빙.  (4) 매입세액  시범납세인이 시범납세인 중 소규모납세인이 제공하는 교통운송업 서비스를 받은 경우, 취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세금포함가격 금액과 7%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시범납세인이 시범지역으로부터 취득한 2012년 1월 1일(포함) 이후 발행한 운송비용결산증명(철도운송비용결산증명 제외)는 증치세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일반납세인 자격인증과 세액계산방법  1.《시범실시방법》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서비스 연간판매액 표준은 500만 위안(본 금액 포함, 이하 동일)이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시범 상황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서비스 연간판매액 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시범지역 과세대상서비스 연간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도로, 내륙하천 물운송업 계산서자가발행납세인은 일반납세인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2. 시범납세인 중 일반납세인이 제공하는 공공교통운송서비스(페리, 공공교통 여객운송, 전철교통, 택시 포함)는 간이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6) 여러 년도에 걸친 임대  시범납세인이 2011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체결한 집행 미완료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 이전에는 현행 영업세정책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한다.  (7) 비고정 사업자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시범지역에 없는 비고정사업자가 비시범지역에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정책**  다음의 정황에 부합될 경우,《시범실시방법》제6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원천징수한다.  (1) 경내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경내 대리인과 서비스 이용자의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모두 시범지역에 있음.  (2 서비스 이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시범지역에 있음.  상술한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현행 영업세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원천징수한다.  **3. 기존의 증치세 납세인(《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인) 관련 정책**  (1) 매입세액  1. 기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시범납세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를 받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증치세액이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2. 기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시범납세인 중의 소규모납세인이 제공하는 교통운송업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제공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세금포함가격 금액과 7%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시범지역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허가하는 매입세액은 세무기관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세금을 납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통용납부서(이하 ‘통용납부서’로 함)에 명기된 증치세액으로 한다.  상술한 납세인이 통용납부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경우, 서면계약과 지급증명, 경외 단위의 계좌거래내용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시범지역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화물을 구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용역을 접수하고 《과세대상서비스 범위 주석》의 항목에 사용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이하 《증치세조례》) 제10조에서 말하는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에 사용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5. 기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시범납세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접수할 경우,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간이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항목,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할 경우, 이 중 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영업권, 상표, 저작권, 유형동산 임대는, 상술한 항목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영업권, 상표, 저작권, 유형동산 임대만을 가리킨다.  ② 접수한 여객운송서비스.  ③ 비정상손실의 구매화물과 관련한 교통운송업 서비스.  ④ 비정상손실의 재공품과 완제품에 사용  되는 구매화물과 관련한 교통운송업 서비스.  상술한 비증치세 과세대상항목이라 함은, 시범지역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의 경우, 《증치세조례》 제10조에서 말하는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을 말하지만,《과세대상서비스 범위 주석》의 항목은 포함하지 하며, 비시범지역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의 경우, 《증치세조례》 제10조에서 말하는 비증치세과세대상 항목을 말한다.  6. 기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시범지역으로부터 취득한 2012년 1월 1일(포함) 이후 발행한 운송비용결산증명(철도운송비용결산증명 제외)는 일괄적으로 증치세공제증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일반납세인 인증  시범지역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겸업하고, 《시범실시방법》과 본 규정 제1조 제(5)관의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인 인증을 신청해야 할 경우, 일반납세인 인증수속을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  (3) 증치세 기말이월 공제세액  시범지역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겸업할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증치세 기말이월공제세액은 과세대상서비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첨부3: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범 과도**  **정책에 대한 규정**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에서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한 후, 시범납세인 (《시범실시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인)이 기존에 향유하던 영업세 우대정책의 안정적인 과도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기간 시범납세인과 관련한 증치세 우대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다음의 항목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1) 개인의 저작권양도.  (2) 장애인 개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  (3)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기 농약 살포서비스.  (4) 시범납세인이 제공하는 기술양도, 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과 기술서비스.  1. 기술양도란 양도자가 보유하던 특허기술 및 비특허기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개발이란 개발자가 타인에게 위탁을 받아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또는 신소재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문이란 특정기술항목에 대하여 가행성 논증과 기술예측, 특정기술조사, 분석평가보고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술양도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란 양도자(또는 수탁자)가 기술양도계약 또는 개발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양수자(또는 위탁자)가 양도(또는 위탁개발)된 기술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업무를 말하며, 이 부분의 기술자문 및 서비스 대금과 기술양도(또는 개발) 대금은 동일한 세금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2. 비준절차.  시범납세인이 증치세 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양도 및 개발에 대한 서면계약에 의하여, 시범납세인 소재지 성급과학기술주관부문의 인증을 받고, 관련 서면계약과 과학기술주관부문의 심사의견 증명문건을 주관국가세무국에 제출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5)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합동에너지관리항목의 실시 과정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합동에너지관리항목 관련 기술을 실시할 경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발표한《에너지관리계약 기술통칙》(GB/T24915-2010)에서 규정한 기술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2.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에너지사용기업과《에너지절약효과 분리귀속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서식과 내용은《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발표한《에너지관리계약 기술통칙》(GB/T24915-2010) 등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해에 등록된 기업이 외국고객서비스 아웃소싱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  외국고객서비스 아웃소싱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해에 등록한 기업이 경외 단위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본 기업 또는 본 기업이 직접 재 도급한 기업이 경외에 정보기술 아웃소싱서비스(ITO), 비즈니스프로세스 아웃소싱서비스(BPO) 또는 지식프로세스 아웃소싱서비스(KPO)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대만항운회사가 해협양안(海峡两岸) 해상직항업무를 수행하고 대륙으로부터 수취한 운송수입.  대만항운회사란 교통운송부가 발행한 “대만해협 양안 간 수로운송허가증”을 취득하고 해당 허가증에 명기된 회사 등록주소가 대만인 항운회사를 말한다.  (8) 대만항공사가 해협양안 공중직항업무를 수행하고 대륙으로부터 수취한 운송수입.  대만항공사란 중국민용항공국이 발행한 “경영허가”를 취득하거나《해협양안항공운송협정》과 《해협양안항공운송보충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준을 받고 양안간 여객과 화물, 우편물의 비정기적(전세기) 운송업무를 경영하며, 회사 등록주소가 대만인 항공회사를 말한다.  (9) 미국ABS선급협회는 비영리 목적을 유지하고 중국선급협회도 미국에서 동등한 면세대우를 향유한다는 조건으로, 중국 경내에서 제공하는 선급검사서비스.  (10) 종군가족 취업  1. 종군가족의 취업을 위하여 신설한 기업은 세무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은 종군가족이 기업 총 인원수의 60%(포함) 이상을 차지하고, 군단(포함) 이상의 정치기관과 행정업무기관이 발행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개체경영(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종군가족은 세무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종군가족은 반드시 사단 이상의 정치기관이 발행하는 신분을 표명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세무부문은 상응한 심사인증을 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의 면세 향유기간과 기업에 대한 연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세정책을 취소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각 종군가족은 1회 면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11) 군대 전역간부 취업  1. 개체경영(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군대 전역간부는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취득하고, 세무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군대 전역간부의 취업을 위하여 신설한 기업에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군대 전역간부가 기업 총 인원수의 60%(포함) 이상을 차지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취득하고, 세무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상술한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군대 전역간부는 반드시 사단 이상 군대조직이 발행한 전역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12) 성진(城鎭) 퇴역군인 취업  1. 자가취업한 성진(城鎭) 퇴역군인의 취업을 위해 신설한 서비스기업이 당해연도에 새로 배치한 자가취업 성진(城鎭) 퇴역군인이 총 직원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만기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급 이상 민정부문의 인증과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3년 내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광고서비스 제외)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자가취업한 성진(城鎭) 퇴역군인이 개체경영(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무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광고서비스 제외)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신설한 서비스기업이란《성진(城鎭) 퇴역군인 자가취직 우대정책 지원의견에 대한 통지 전파》(국판발[2004]10호)를 발표한 후에 신설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 기업 합병과 분할, 체제개편(改制), 조직재편(改組), 증축, 이전, 생산전환 및 새로운 구성원 유치, 책임자 또는 예속관계 변경, 기업명칭을 변경한 기업은 신설기업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자가취업한 성진(城鎭) 퇴역군인이란 성진(城鎭)의 안치조건에 부합하며, 안치지역 민정부문과《퇴역군인자가취직협의서》를 체결하고,《성진(城鎭) 퇴역군인자가취업증》을 수령한 사관과 의무병을 말한다.  (13) 실업자 취업  1.《취업실업등기증》(“자주창업세수정책”이라 명기하거나 《대학졸업생 자주창업증》 첨부)를 보유한 인원이 개체경영(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내에 업체별로 매년 8,000위안의 한도액에 따라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증치세와 성시건설세, 교육비부가, 개인소득세를 차례로 차감한다.  시범납세인의 연도 납부할 세액이 상술한 공제한도액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금에 한하며, 상술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상술한 공제한도액에 한해야 한다.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개체경영(개인사업) 시범납세인이란《과세대상서비스 범위주석》의 서비스(광고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범납세인을 말한다.  《취업실업등기증》(“자주창업세수정책”이라 명기하거나 《대학졸업생 자주창업증》 첨부)를 보유한 인원이란 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공공취업 서비스기구에 실업을 등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 ② 무직자 가구 및 도시주민 저보(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대상 가구의 노동연령 이내의 실업등기인원 ③ 졸업연도 이내의 대학졸업생을 말한다.  대학졸업생이란 대학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보통대학과 성인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말하며, 졸업연도란 졸업 소재의 자연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서비스기업(광고서비스 제외)이 새로 설치한 직위 중, 당해연도에《취업실업등기증》(“기업유치세수정책”이라 명기)를 보유한 인원을 새로 채용하고, 만기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경우, 3년 내에 실제채용자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증치세와 성시건설세, 교육비부가, 기업소득세를 차례로 차감한다. 정액표준은 1인당 매년 4,000위안, 상하 20%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시범지역 성급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해당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정액표준을 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비안한다.  상술한 표준에 따라 계산한 세수공제액은 기업이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증치세와 성시건설세, 교육비부가, 기업소득세 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완전히 차감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취업실업등기증》(“기업유치세수정책”이라 명기)를 보유한 인원이라 함은 ① 국유기업 정리실업인원; ② 국유기업 폐업·파산으로 안치가 필요한 인원; ③ 국유기업이 설립한 집체기업(즉 공장이 설립한 대집체기업)의 정리직원; ④ 최저생활보장을 향유하고 실업한지 1년 이상인 성진(城鎭)의 기타 실업등기인원을 말한다.  서비스기업이란 기존의 영업세 “서비스업” 세목범위 이내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유기업이 설립한 집체기업(즉 공장이 설립한 대형집체기업)이라 함은, 1970- 1980년대, 국유기업이 비준하거나 자금을 협조하여 설립하고, 도시로 귀향한 청년지식인과 국유기업 직원자녀 취업을 해결할 목적으로, 주로 주최 국유기업에 부속제품 또는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상행정기관에 집체소유제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공장이 설립한 대형집체기업의 정리직원은 국유기업 혼합부서에서 근무하는 집체기업 정리직원을 포함한다.  3. 상술한 우대정책이 적용되는 인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취업실업 등기증》과 《대학졸업생 자주창업증》 등 증빙을 수령한다.  ①《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규정》(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령 제28호) 제63조 규정에 따라, 법정노동연령 이내이고, 노동능력과, 취업요구가 있으며, 무직상태인 성진(城鎭)의 상주인원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실업등기를 하고《취업실업등기증》을 수령한다. 이 중, 도시에 취직한 농촌 근로자와 기타 비현지호적인원이 상주지에서 만 6개월 안정적인 취직을 실현한 경우, 실업 후 상주지에 등기할 수 있다.  ② 무직자 가구는 주거단지가 발행한 증명서를 성진(城鎭)의 저보(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대상 가구는 저보증명서에 의거하여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실업등기를 진행하고 《취업실업등기증》을 수령한다.  ③ 졸업연도 이내의 대학졸업생이 재학기간 학교가 발행한 관련 증명에 의거하여, 학교 소재지 성급교육행정부문의 확인과 인증을 거쳐《대학졸업생자주창업증》 (졸업연도에만 적용)을 취득하고, 창업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실업 등기증》을 신청하며; 대학졸업생은 졸업 후 직접 창업지 공공취업서비스 기구에서《취업실업등기증》을 수령한다.  ④ 서비스기업이 채용한 인원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서 《취업실업 등기증》을 수령한다.  ⑤ 《재취업우대증》은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며, 기존의 우대증 보유자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서《취업실업등기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리실업인원 재취업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우대증 보유자는, 만기까지 기존의 세수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⑥ 상술한 인원이 관련 증빙을 수령한 후, 취업지와 창업지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은 인원범위와 취업·실업상태, 정책의 적용정황을 심사인증하고, 《취업실업 등기증》에 “자주창업세수정책” 또는 “기업유치세수정책”이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한편, 자주창업과 기업유치 세수정책 조건에 부합될 경우, 2가지 문구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 《취업실업등기증》에 인감을 날인하고, 감면세 소속시간을 명기한다.  4. 상술한 세수우대정책의 비준기한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범납세인이 세무기관에서 감면세수속을 처리한 날로부터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세수우대정책을 2013년 12월 31일 만기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만기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항목은 증치세 ‘징수즉시환급’을 실행한다.  (1) 양산보세항만구에 등록한 시범납세인이 제공하는 중국 내 화물운송서비스와 창고보관서비스, 하역운반서비스  (2) 장애인 고용단위는 세무기관이 단위의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수에 따라, 증치세 한도액 ‘징수즉시환급’방법을 실행한다.  상술한 정책은 기존의 영업세 “서비스업” 세목(광고서비스 제외)범위 이내 업무를 수행하여 취득한 수입이 증치세와 영업세 업무수입 합계 중 50%를 차지하는 단위에만 적용된다.  관련 증치세 우대정책 적용단위 조건과 정의, 관리요구 등은 《장애인 취업 관련 세수혜택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7]9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시범납세인 중의 일반납세인이 파이프라인수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증치세 실제세금부담이 3% 이상인 부분에 대해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정책을 실행한다.  (4)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 비준을 득하고 금융리스업무를 경영하는 시범납세인 중의 일반납세인이 유형동산 금융리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증치세 실제세금부담이 3%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정책을 실행한다.  3. 2011년 12월 31일(포함) 전까지 시범납세인은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 세수우대를 향유하고, 세수우대정책의 잔여기한 이내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치세 우대를 향유한다. |  | **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  **增值税试点的通知**  财税[2011]11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经国务院批准，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根据《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我们制定了《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和《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现印发你们，自2012年1月1日起施行。  上海市各相关部门要根据试点的要求，认真组织试点工作，确保试点的顺利进行，遇到问题及时向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报告。    附件1：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  　 附件2：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  　 附件3：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十一月十六日    　　附件1：    **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  **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    **第一章 纳税人和扣缴义务人**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称境内）提供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服务（以下称应税服务）的单位和个人，为增值税纳税人。纳税人提供应税服务，应当按照本办法缴纳增值税，不再缴纳营业税。  　　单位，是指企业、行政单位、事业单位、军事单位、社会团体及其他单位。  　　个人，是指个体工商户和其他个人。  **第二条** 单位以承包、承租、挂靠方式经营的，承包人、承租人、挂靠人（以下称承包人）以发包人、出租人、被挂靠人（以下称发包人）名义对外经营并由发包人承担相关法律责任的，以该发包人为纳税人。否则，以承包人为纳税人。  **第三条** 纳税人分为一般纳税人和小规模纳税人。  　　应税服务的年应征增值税销售额（以下称应税服务年销售额）超过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标准的纳税人为一般纳税人，未超过规定标准的纳税人为小规模纳税人。  　　应税服务年销售额超过规定标准的其他个人不属于一般纳税人；非企业性单位、不经常提供应税服务的企业和个体工商户可选择按照小规模纳税人纳税。  **第四条** 小规模纳税人会计核算健全，能够提供准确税务资料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一般纳税人资格认定，成为一般纳税人。  　　会计核算健全，是指能够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规定设置账簿，根据合法、有效凭证核算。  **第五条** 符合一般纳税人条件的纳税人应当向主管税务机关申请一般纳税人资格认定。具体认定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除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一经认定为一般纳税人后，不得转为小规模纳税人。  **第六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以下称境外）的单位或者个人在境内提供应税服务，在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以其代理人为增值税扣缴义务人；在境内没有代理人的，以接受方为增值税扣缴义务人。  **第七条** 两个或者两个以上的纳税人，经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批准可以视为一个纳税人合并纳税。具体办法由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另行制定。    **第二章 应税服务**  **第八条** 应税服务，是指陆路运输服务、水路运输服务、航空运输服务、管道运输服务、研发和技术服务、信息技术服务、文化创意服务、物流辅助服务、有形动产租赁服务、鉴证咨询服务。  　　应税服务的具体范围按照本办法所附的《应税服务范围注释》执行。  **第九条** 提供应税服务，是指有偿提供应税服务。  　　有偿，是指取得货币、货物或者其他经济利益。  　　非营业活动中提供的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服务不属于提供应税服务。  　　非营业活动，是指：  　　（一）非企业性单位按照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为履行国家行政管理和公共服务职能收取政府性基金或者行政事业性收费的活动。  　　（二）单位或者个体工商户聘用的员工为本单位或者雇主提供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服务。  　　（三）单位或者个体工商户为员工提供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服务。  　　（四）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第十条** 在境内提供应税服务，是指应税服务提供方或者接受方在境内。  　　下列情形不属于在境内提供应税服务：  　　（一）境外单位或者个人向境内单位或者个人提供完全在境外消费的应税服务。  　　（二）境外单位或者个人向境内单位或者个人出租完全在境外使用的有形动产。  　　（三）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第十一条** 单位和个体工商户的下列情形，视同提供应税服务：  　　（一）向其他单位或者个人无偿提供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服务，但以公益活动为目的或者以社会公众为对象的除外。  　　（二）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第三章 税率和征收率**  **第十二条** 增值税税率：  　　（一）提供有形动产租赁服务，税率为17%。  　　（二）提供交通运输业服务，税率为11%。  　　（三）提供现代服务业服务（有形动产租赁服务除外），税率为6%。  　　（四）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应税服务，税率为零。  **第十三条** 增值税征收率为3%。    **第四章 应纳税额的计算**  **第一节 一般性规定**  **第十四条** 增值税的计税方法，包括一般计税方法和简易计税方法。  **第十五条** 一般纳税人提供应税服务适用一般计税方法计税。  　　一般纳税人提供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特定应税服务，可以选择适用简易计税方法计税，但一经选择，36个月内不得变更。  **第十六条** 小规模纳税人提供应税服务适用简易计税方法计税。  **第十七条** 境外单位或者个人在境内提供应税服务，在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扣缴义务人按照下列公式计算应扣缴税额：  　　应扣缴税额=接受方支付的价款÷（1+税率）×税率    **第二节 一般计税方法**  **第十八条** 一般计税方法的应纳税额，是指当期销项税额抵扣当期进项税额后的余额。  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当期销项税额－当期进项税额  　　当期销项税额小于当期进项税额不足抵扣时，其不足部分可以结转下期继续抵扣。  **第十九条** 销项税额，是指纳税人提供应税服务按照销售额和增值税税率计算的增值税额。  销项税额计算公式：  　　销项税额=销售额×税率  **第二十条** 一般计税方法的销售额不包括销项税额，纳税人采用销售额和销项税额合并定价方法的，按照下列公式计算销售额：  　　销售额＝含税销售额÷（1+税率）  **第二十一条** 进项税额，是指纳税人购进货物或者接受加工修理修配劳务和应税服务，支付或者负担的增值税税额。  **第二十二条** 下列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  　　（一）从销售方或者提供方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  　　（二）从海关取得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  （三）购进农产品，除取得增值税专用发票或者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外，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3%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  计算公式为：  　　进项税额=买价×扣除率  　　买价，是指纳税人购进农产品在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上注明的价款和按照规定缴纳的烟叶税。  （四）接受交通运输业服务，除取得增值税专用发票外，按照运输费用结算单据上注明的运输费用金额和7%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  进项税额计算公式：  　　进项税额=运输费用金额×扣除率  　　运输费用金额，是指运输费用结算单据上注明的运输费用（包括铁路临管线及铁路专线运输费用）、建设基金，不包括装卸费、保险费等其他杂费。  　　（五）接受境外单位或者个人提供的应税服务，从税务机关或者境内代理人取得的解缴税款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通用缴款书（以下称通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  **第二十三条** 纳税人取得的增值税扣税凭证不符合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税务总局有关规定的，其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增值税扣税凭证，是指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农产品收购发票、农产品销售发票、运输费用结算单据和通用缴款书。  　　纳税人凭通用缴款书抵扣进项税额的，应当具备书面合同、付款证明和境外单位的对账单或者发票。资料不全的，其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第二十四条** 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一）用于适用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非增值税应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的购进货物、接受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应税服务。其中涉及的固定资产、专利技术、非专利技术、商誉、商标、著作权、有形动产租赁，仅指专用于上述项目的固定资产、专利技术、非专利技术、商誉、商标、著作权、有形动产租赁。  　　（二）非正常损失的购进货物及相关的加工修理修配劳务和交通运输业服务。  　　（三）非正常损失的在产品、产成品所耗用的购进货物（不包括固定资产）、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交通运输业服务。  　　（四）接受的旅客运输服务。  　　（五）自用的应征消费税的摩托车、汽车、游艇，但作为提供交通运输业服务的运输工具和租赁服务标的物的除外。  **第二十五条** 非增值税应税项目，是指非增值税应税劳务、转让无形资产（专利技术、非专利技术、商誉、商标、著作权除外）、销售不动产以及不动产在建工程。  　　非增值税应税劳务，是指《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项目以外的营业税应税劳务。  　　不动产，是指不能移动或者移动后会引起性质、形状改变的财产，包括建筑物、构筑物和其他土地附着物。  　　纳税人新建、改建、扩建、修缮、装饰不动产，均属于不动产在建工程。  　　个人消费，包括纳税人的交际应酬消费。  　　固定资产，是指使用期限超过12个月的机器、机械、运输工具以及其他与生产经营有关的设备、工具、器具等。  　　非正常损失，是指因管理不善造成被盗、丢失、霉烂变质的损失，以及被执法部门依法没收或者强令自行销毁的货物。  **第二十六条** 适用一般计税方法的纳税人,兼营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非增值税应税劳务、免征增值税项目而无法划分不得抵扣的进项税额，按照下列公式计算不得抵扣的进项税额：  　　不得抵扣的进项税额＝当期无法划分的全部进项税额×（当期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销售额+非增值税应税劳务营业额+免征增值税项目销售额）÷（当期全部销售额+当期全部营业额）  　　主管税务机关可以按照上述公式依据年度数据对不得抵扣的进项税额进行清算。  **第二十七条** 已抵扣进项税额的购进货物、接受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应税服务，发生本办法第二十四条规定情形（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非增值税应税劳务、免征增值税项目除外）的，应当将该进项税额从当期进项税额中扣减；无法确定该进项税额的，按照当期实际成本计算应扣减的进项税额。  **第二十八条** 纳税人提供的适用一般计税方法计税的应税服务，因服务中止或者折让而退还给购买方的增值税额，应当从当期的销项税额中扣减；发生服务中止、购进货物退出、折让而收回的增值税额，应当从当期的进项税额中扣减。  **第二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者，应当按照销售额和增值税税率计算应纳税额，不得抵扣进项税额，也不得使用增值税专用发票：  　　（一） 一般纳税人会计核算不健全，或者不能够提供准确税务资料的。  　　（二） 应当申请办理一般纳税人资格认定而未申请的。    **第三节 简易计税方法**  **第三十条** 简易计税方法的应纳税额，是指按照销售额和增值税征收率计算的增值税额，不得抵扣进项税额。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销售额×征收率  **第三十一条** 简易计税方法的销售额不包括其应纳税额，纳税人采用销售额和应纳税额合并定价方法的，按照下列公式计算销售额：  　　销售额＝含税销售额÷（1＋征收率）  **第三十二条** 纳税人提供的适用简易计税方法计税的应税服务，因服务中止或者折让而退还给接受方的销售额，应当从当期销售额中扣减。扣减当期销售额后仍有余额造成多缴的税款，可以从以后的应纳税额中扣减。    **第四节 销售额的确定**  **第三十三条** 销售额，是指纳税人提供应税服务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  　　价外费用，是指价外收取的各种性质的价外收费，但不包括代为收取的政府性基金或者行政事业性收费。  **第三十四条** 销售额以人民币计算。  　　纳税人按照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折合率可以选择销售额发生的当天或者当月1日的人民币汇率中间价。纳税人应当在事先确定采用何种折合率，确定后12个月内不得变更。  **第三十五条** 纳税人提供适用不同税率或者征收率的应税服务，应当分别核算适用不同税率或者征收率的销售额；未分别核算的，从高适用税率。  **第三十六条** 纳税人兼营营业税应税项目的，应当分别核算应税服务的销售额和营业税应税项目的营业额；未分别核算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应税服务的销售额。  **第三十七条** 纳税人兼营免税、减税项目的，应当分别核算免税、减税项目的销售额；未分别核算的，不得免税、减税。  **第三十八条** 纳税人提供应税服务，开具增值税专用发票后，提供应税服务中止、折让、开票有误等情形，应当按照国家税务总局的规定开具红字增值税专用发票。未按照规定开具红字增值税专用发票的，不得按照本办法第二十八条和第三十二条的规定扣减销项税额或者销售额。  **第三十九条** 纳税人提供应税服务，将价款和折扣额在同一张发票上分别注明的，以折扣后的价款为销售额；未在同一张发票上分别注明的，以价款为销售额，不得扣减折扣额。  **第四十条** 纳税人提供应税服务的价格明显偏低或者偏高且不具有合理商业目的的，或者发生本办法第十一条所列视同提供应税服务而无销售额的，主管税务机关有权按照下列顺序确定销售额：  　　（一）按照纳税人最近时期提供同类应税服务的平均价格确定。  　　（二）按照其他纳税人最近时期提供同类应税服务的平均价格确定。  （三）按照组成计税价格确定。  组成计税价格的公式为：  　　组成计税价格=成本×（1+成本利润率）  　　成本利润率由国家税务总局确定。    **第五章 纳税义务、扣缴义务发生时间和纳税地点**  **第四十一条** 增值税纳税义务发生时间为：  　　（一）纳税人提供应税服务并收讫销售款项或者取得索取销售款项凭据的当天；先开具发票的，为开具发票的当天。  　　收讫销售款项，是指纳税人提供应税服务过程中或者完成后收到款项。  　　取得索取销售款项凭据的当天，是指书面合同确定的付款日期；未签订书面合同或者书面合同未确定付款日期的，为应税服务完成的当天。  　　（二）纳税人提供有形动产租赁服务采取预收款方式的，其纳税义务发生时间为收到预收款的当天。  　　（三）纳税人发生本办法第十一条视同提供应税服务的，其纳税义务发生时间为应税服务完成的当天。  　　（四）增值税扣缴义务发生时间为纳税人增值税纳税义务发生的当天。  **第四十二条** 增值税纳税地点为：  　　（一）固定业户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总机构和分支机构不在同一县（市）的，应当分别向各自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经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或者其授权的财政和税务机关批准，可以由总机构合并向总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二）非固定业户应当向应税服务发生地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申报纳税的，由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主管税务机关补征税款。  　　（三）扣缴义务人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其扣缴的税款。  **第四十三条** 增值税的纳税期限分别为1日、3日、5日、10日、15日、1个月或者1个季度。纳税人的具体纳税期限，由主管税务机关根据纳税人应纳税额的大小分别核定。以1个季度为纳税期限的规定适用于小规模纳税人以及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纳税人。不能按照固定期限纳税的，可以按次纳税。  　　纳税人以1个月或者1个季度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15日内申报纳税；以1日、3日、5日、10日或者15日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5日内预缴税款，于次月1日起15日内申报纳税并结清上月应纳税款。  扣缴义务人解缴税款的期限，按照前两款规定执行。    **第六章 税收减免**  **第四十四条** 纳税人提供应税服务适用免税、减税规定的，可以放弃免税、减税，依照本办法的规定缴纳增值税。放弃免税、减税后，36个月内不得再申请免税、减税。  **第四十五条** 个人提供应税服务的销售额未达到增值税起征点的，免征增值税；达到起征点的，全额计算缴纳增值税。  　　增值税起征点不适用于认定为一般纳税人的个体工商户。  **第四十六条** 增值税起征点幅度如下:  　　（一）按期纳税的，为月应税销售额5000-20000元（含本数）。  　　（二）按次纳税的，为每次（日）销售额300-500元（含本数）。  　　起征点的调整由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和国家税务局应当在规定的幅度内，根据实际情况确定本地区适用的起征点，并报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备案。    **第七章 征收管理**  **第四十七条** 营业税改征的增值税，由国家税务局负责征收。  **第四十八条** 纳税人提供适用零税率的应税服务，应当按期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退（免）税，具体办法由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制定。  **第四十九条** 纳税人提供应税服务，应当向索取增值税专用发票的接受方开具增值税专用发票，并在增值税专用发票上分别注明销售额和销项税额。  　　属于下列情形之一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一）向消费者个人提供应税服务。  　　（二）适用免征增值税规定的应税服务。  **第五十条** 小规模纳税人提供应税服务，接受方索取增值税专用发票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代开。  **第五十一条** 纳税人增值税的征收管理，按照本办法和《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现行增值税征收管理有关规定执行。    **第八章 附 则**  **第五十二条** 纳税人应当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进行增值税会计核算。  **第五十三条** 本办法适用于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以及向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提供应税服务的境外单位和个人。  　　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是指机构所在地在试点地区的单位和个体工商户，以及居住地在试点地区的其他个人。    　　附：    **应税服务范围注释**    **一、交通运输业**  　　交通运输业，是指使用运输工具将货物或者旅客送达目的地，使其空间位置得到转移的业务活动。包括陆路运输服务、水路运输服务、航空运输服务和管道运输服务。  **（一）陆路运输服务。**  　　陆路运输服务，是指通过陆路（地上或者地下）运送货物或者旅客的运输业务活动，包括公路运输、缆车运输、索道运输及其他陆路运输，暂不包括铁路运输。  **（二）水路运输服务。**  　　水路运输服务，是指通过江、河、湖、川等天然、人工水道或者海洋航道运送货物或者旅客的运输业务活动。  　　远洋运输的程租、期租业务，属于水路运输服务。  　　程租业务，是指远洋运输企业为租船人完成某一特定航次的运输任务并收取租赁费的业务。  　　期租业务，是指远洋运输企业将配备有操作人员的船舶承租给他人使用一定期限，承租期内听候承租方调遣，不论是否经营，均按天向承租方收取租赁费，发生的固定费用均由船东负担的业务。  **（三）航空运输服务。**  　　航空运输服务，是指通过空中航线运送货物或者旅客的运输业务活动。  　　航空运输的湿租业务，属于航空运输服务。  　　湿租业务，是指航空运输企业将配备有机组人员的飞机承租给他人使用一定期限，承租期内听候承租方调遣，不论是否经营，均按一定标准向承租方收取租赁费，发生的固定费用均由承租方承担的业务。  **（四）管道运输服务。**  　　管道运输服务，是指通过管道设施输送气体、液体、固体物质的运输业务活动。    **二、部分现代服务业**  　　部分现代服务业，是指围绕制造业、文化产业、现代物流产业等提供技术性、知识性服务的业务活动。包括研发和技术服务、信息技术服务、文化创意服务、物流辅助服务、有形动产租赁服务、鉴证咨询服务。  **（一）研发和技术服务。**  　　研发和技术服务，包括研发服务、技术转让服务、技术咨询服务、合同能源管理服务、工程勘察勘探服务。  　　1．研发服务，是指就新技术、新产品、新工艺或者新材料及其系统进行研究与试验开发的业务活动。  　　2. 技术转让服务，是指转让专利或者非专利技术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业务活动。  　　3. 技术咨询服务，是指对特定技术项目提供可行性论证、技术预测、专题技术调查、分析评价报告和专业知识咨询等业务活动。  　　4. 合同能源管理服务，是指节能服务公司与用能单位以契约形式约定节能目标，节能服务公司提供必要的服务，用能单位以节能效果支付节能服务公司投入及其合理报酬的业务活动。  　　5. 工程勘察勘探服务，是指在采矿、工程施工以前，对地形、地质构造、地下资源蕴藏情况进行实地调查的业务活动。  **（二）信息技术服务。**  　　信息技术服务，是指利用计算机、通信网络等技术对信息进行生产、收集、处理、加工、存储、运输、检索和利用，并提供信息服务的业务活动。包括软件服务、电路设计及测试服务、信息系统服务和业务流程管理服务。  　　1.软件服务，是指提供软件开发服务、软件咨询服务、软件维护服务、软件测试服务的业务行为。  　　2.电路设计及测试服务，是指提供集成电路和电子电路产品设计、测试及相关技术支持服务的业务行为。  　　3.信息系统服务，是指提供信息系统集成、网络管理、桌面管理与维护、信息系统应用、基础信息技术管理平台整合、信息技术基础设施管理、数据中心、托管中心、安全服务的业务行为。  　　4．业务流程管理服务，是指依托计算机信息技术提供的人力资源管理、财务经济管理、金融支付服务、内部数据分析、呼叫中心和电子商务平台等服务的业务活动。  **（三）文化创意服务**。  　　文化创意服务，包括设计服务、商标著作权转让服务、知识产权服务、广告服务和会议展览服务。  　　1. 设计服务，是指把计划、规划、设想通过视觉、文字等形式传递出来的业务活动。包括工业设计、造型设计、服装设计、环境设计、平面设计、包装设计、动漫设计、展示设计、网站设计、机械设计、工程设计、创意策划等。  　　2. 商标著作权转让服务，是指转让商标、商誉和著作权的业务活动。  　　3. 知识产权服务，是指处理知识产权事务的业务活动。包括对专利、商标、著作权、软件、集成电路布图设计的代理、登记、鉴定、评估、认证、咨询、检索服务。  　　4. 广告服务，是指利用图书、报纸、杂志、广播、电视、电影、幻灯、路牌、招贴、橱窗、霓虹灯、灯箱、互联网等各种形式为客户的商品、经营服务项目、文体节目或者通告、声明等委托事项进行宣传和提供相关服务的业务活动。包括广告的策划、设计、制作、发布、播映、宣传、展示等。  　　5. 会议展览服务，是指为商品流通、促销、展示、经贸洽谈、民间交流、企业沟通、国际往来等举办的各类展览和会议的业务活动。  **（四）物流辅助服务。**  　　物流辅助服务，包括航空服务、港口码头服务、货运客运场站服务、打捞救助服务、货物运输代理服务、代理报关服务、仓储服务和装卸搬运服务。  　　1. 航空服务，包括航空地面服务和通用航空服务。  　　航空地面服务，是指航空公司、飞机场、民航管理局、航站等向在我国境内航行或者在我国境内机场停留的境内外飞机或者其他飞行器提供的导航等劳务性地面服务的业务活动。包括旅客安全检查服务、停机坪管理服务、机场候机厅管理服务、飞机清洗消毒服务、空中飞行管理服务、飞机起降服务、飞行通讯服务、地面信号服务、飞机安全服务、飞机跑道管理服务、空中交通管理服务等。  　　通用航空服务，是指为专业工作提供飞行服务的业务活动，包括航空摄影，航空测量，航空勘探，航空护林，航空吊挂播洒、航空降雨等。  　　2. 港口码头服务，是指港务船舶调度服务、船舶通讯服务、航道管理服务、航道疏浚服务、灯塔管理服务、航标管理服务、船舶引航服务、理货服务、系解缆服务、停泊和移泊服务、海上船舶溢油清除服务、水上交通管理服务、船只专业清洗消毒检测服务和防止船只漏油服务等为船只提供服务的业务活动。  　　3. 货运客运场站服务，是指货运客运场站（不包括铁路运输）提供的货物配载服务、运输组织服务、中转换乘服务、车辆调度服务、票务服务和车辆停放服务等业务活动。  　　4. 打捞救助服务，是指提供船舶人员救助、船舶财产救助、水上救助和沉船沉物打捞服务的业务活动。  　　5. 货物运输代理服务，是指接受货物收货人、发货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或者以自己的名义，在不直接提供货物运输劳务情况下，为委托人办理货物运输及相关业务手续的业务活动。  　　6. 代理报关服务，是指接受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委托，代为办理报关手续的业务活动。  　　7. 仓储服务，是指利用仓库、货场或者其他场所代客贮放、保管货物的业务活动。  　　8. 装卸搬运服务,是指使用装卸搬运工具或人力、畜力将货物在运输工具之间、装卸现场之间或者运输工具与装卸现场之间进行装卸和搬运的业务活动。  **（五）有形动产租赁服务。**  　　有形动产租赁，包括有形动产融资租赁和有形动产经营性租赁。  　　1. 有形动产融资租赁，是指具有融资性质和所有权转移特点的有形动产租赁业务活动。即出租人根据承租人所要求的规格、型号、性能等条件购入有形动产租赁给承租人，合同期内设备所有权属于出租人，承租人只拥有使用权，合同期满付清租金后，承租人有权按照残值购入有形动产，以拥有其所有权。不论出租人是否将有形动产残值销售给承租人，均属于融资租赁。  　　2. 有形动产经营性租赁，是指在约定时间内将物品、设备等有形动产转让他人使用且租赁物所有权不变更的业务活动。  　　远洋运输的光租业务、航空运输的干租业务，属于有形动产经营性租赁。  　　光租业务，是指远洋运输企业将船舶在约定的时间内出租给他人使用，不配备操作人员，不承担运输过程中发生的各项费用，只收取固定租赁费的业务活动。  　　干租业务，是指航空运输企业将飞机在约定的时间内出租给他人使用，不配备机组人员，不承担运输过程中发生的各项费用，只收取固定租赁费的业务活动。  **（六）鉴证咨询服务。**  　　鉴证咨询服务，包括认证服务、鉴证服务和咨询服务。  　　1. 认证服务，是指具有专业资质的单位利用检测、检验、计量等技术，证明产品、服务、管理体系符合相关技术规范、相关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或者标准的业务活动。  　　2. 鉴证服务，是指具有专业资质的单位，为委托方的经济活动及有关资料进行鉴证，发表具有证明力的意见的业务活动。包括会计、税务、资产评估、律师、房地产土地评估、工程造价的鉴证。  　　3. 咨询服务，是指提供和策划财务、税收、法律、内部管理、业务运作和流程管理等信息或者建议的业务活动。      　　附件2：    **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  **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  **规定**    　　为贯彻《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以下称《试点实施办法》），保证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顺利实施，现将试点期间有关事项规定如下：    **一、试点纳税人（指按照《试点实施办法》缴纳增值税的纳税人）有关政策**  　　（一）混业经营。  　　试点纳税人兼有不同税率或者征收率的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应税服务的，应当分别核算适用不同税率或征收率的销售额，未分别核算销售额的，按照以下方法适用税率或征收率：  　　1．兼有不同税率的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应税服务的，从高适用税率。  　　2．兼有不同征收率的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应税服务的，从高适用征收率。  　　3．兼有不同税率和征收率的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或者应税服务的，从高适用税率。  　　（二）油气田企业。  　　试点地区的油气田企业提供应税服务，应当按照《试点实施办法》缴纳增值税，不再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油气田企业增值税管理办法>的通知》（财税[2009]8号）。  　　(三)销售额。  　　1.试点纳税人提供应税服务，按照国家有关营业税政策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允许其以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扣除支付给非试点纳税人（指试点地区不按照《试点实施办法》缴纳增值税的纳税人和非试点地区的纳税人）价款后的余额为销售额。  　　试点纳税人中的小规模纳税人提供交通运输业服务和国际货物运输代理服务，按照国家有关营业税政策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其支付给试点纳税人的价款，也允许从其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中扣除。  　　试点纳税人中的一般纳税人提供国际货物运输代理服务，按照国家有关营业税政策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其支付给试点纳税人的价款，也允许从其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中扣除；其支付给试点纳税人的价款，取得增值税专用发票的，不得从其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中扣除。  　　允许扣除价款的项目，应当符合国家有关营业税差额征税政策规定。  　　2.试点纳税人从全部价款和价外费用中扣除价款，应当取得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税务总局有关规定的凭证。否则，不得扣除。  　　上述凭证是指：  　　（1）支付给境内单位或者个人的款项，且该单位或者个人发生的行为属于增值税或营业税征收范围的，以该单位或者个人开具的发票为合法有效凭证。  　　（2）支付的行政事业性收费或者政府性基金，以开具的财政票据为合法有效凭证。  　　（3）支付给境外单位或者个人的款项，以该单位或者个人的签收单据为合法有效凭证，税务机关对签收单据有疑义的，可以要求其提供境外公证机构的确认证明。  　　（4）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凭证。  　　（四）进项税额。  　　试点纳税人接受试点纳税人中的小规模纳税人提供的交通运输业服务，按照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价税合计金额和7%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  　　试点纳税人从试点地区取得的2012年1月1日（含）以后开具的运输费用结算单据（铁路运输费用结算单据除外），不得作为增值税扣税凭证。  　　（五）一般纳税人资格认定和计税方法。  　　1．《试点实施办法》第三条规定的应税服务年销售额标准为500万元（含本数，下同）。  　　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可以根据试点情况对应税服务年销售额标准进行调整。  　 试点地区应税服务年销售额未超过500万元的原公路、内河货物运输业自开票纳税人，应当申请认定为一般纳税人。  　　2.试点纳税人中的一般纳税人提供的公共交通运输服务（包括轮客渡、公交客运、轨道交通、出租车），可以选择按照简易计税方法计算缴纳增值税。  　　（六）跨年度租赁。  　　试点纳税人在2011年12月31日（含）前签订的尚未执行完毕的租赁合同，在合同到期日之前继续按照现行营业税政策规定缴纳营业税。  　　（七）非固定业户。  　　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在试点地区的非固定业户在非试点地区提供应税服务，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增值税。  **二、扣缴义务人有关政策**  　　符合下列情形的，按照《试点实施办法》第六条规定代扣代缴增值税：  　　（一）以境内代理人为扣缴义务人的，境内代理人和接受方的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均在试点地区。  　　（二）以接受方为扣缴义务人的，接受方的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在试点地区。  　　不符合上述情形的，仍按照现行营业税有关规定代扣代缴营业税。    **三、原增值税纳税人（指按照《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缴纳增值税的纳税人）有关政策**  　　（一）进项税额。  　　1．原增值税一般纳税人接受试点纳税人提供的应税服务，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为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  　　2.原增值税一般纳税人接受试点纳税人中的小规模纳税人提供的交通运输业服务，按照从提供方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价税合计金额和7%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从销项税额中抵扣。  　　3．试点地区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接受境外单位或者个人提供的应税服务，按照规定应当扣缴增值税的，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的进项税额为从税务机关或者代理人取得的解缴税款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通用缴款书（以下称通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  　　上述纳税人凭通用缴款书抵扣进项税额的，应当具备书面合同、付款证明和境外单位的对账单或者发票。否则，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4．试点地区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购进货物或者接受加工修理修配劳务，用于《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项目的，不属于《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以下称《增值税条例》）第十条所称的用于非增值税应税项目，其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  　　5．原增值税一般纳税人接受试点纳税人提供的应税服务，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1）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非增值税应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其中涉及的专利技术、非专利技术、商誉、商标、著作权、有形动产租赁，仅指专用于上述项目的专利技术、非专利技术、商誉、商标、著作权、有形动产租赁。  　　（2）接受的旅客运输服务。  　　（3）与非正常损失的购进货物相关的交通运输业服务。  　　（4）与非正常损失的在产品、产成品所耗用购进货物相关的交通运输业服务。  　　上述非增值税应税项目，对于试点地区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是指《增值税条例》第十条所称的非增值税应税项目，但不包括《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项目；对于非试点地区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是指《增值税条例》第十条所称的非增值税应税项目。  　　6．原增值税一般纳税人从试点地区取得的2012年1月1日（含）以后开具的运输费用结算单据（铁路运输费用结算单据除外），一律不得作为增值税扣税凭证。  　　（二）一般纳税人认定。  　　试点地区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兼有应税服务，按照《试点实施办法》和本规定第一条第（五）款的规定应当申请认定一般纳税人的，不需要重新办理一般纳税人认定手续。  　　（三）增值税期末留抵税额。  　　试点地区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兼有应税服务的，截止到2011年12月31日的增值税期末留抵税额，不得从应税服务的销项税额中抵扣。    　　附件3：    **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  **规定**    　　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后，为实现试点纳税人（指按照《试点实施办法》缴纳增值税的纳税人）原享受的营业税优惠政策平稳过渡，现将试点期间试点纳税人有关增值税优惠政策规定如下：  　　一、下列项目免征增值税  　　（一）个人转让著作权。  　　（二）残疾人个人提供应税服务。  　　（三）航空公司提供飞机播洒农药服务。  　　（四）试点纳税人提供技术转让、技术开发和与之相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  　　1．技术转让，是指转让者将其拥有的专利和非专利技术的所有权或者使用权有偿转让他人的行为；技术开发，是指开发者接受他人委托，就新技术、新产品、新工艺或者新材料及其系统进行研究开发的行为；技术咨询，是指就特定技术项目提供可行性论证、技术预测、专题技术调查、分析评价报告等。  　　与技术转让、技术开发相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是指转让方（或受托方）根据技术转让或开发合同的规定，为帮助受让方（或委托方）掌握所转让（或委托开发）的技术，而提供的技术咨询、技术服务业务，且这部分技术咨询、服务的价款与技术转让（或开发）的价款应当开在同一张发票上。  2．审批程序。  试点纳税人申请免征增值税时，须持技术转让、开发的书面合同，到试点纳税人所在地省级科技主管部门进行认定，并持有关的书面合同和科技主管部门审核意见证明文件报主管国家税务局备查。  　　（五）符合条件的节能服务公司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中提供的应税服务。  　　上述“符合条件”是指同时满足下列条件：  　　1．节能服务公司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相关技术，应当符合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发布的《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GB/T24915-2010）规定的技术要求。  　　2．节能服务公司与用能企业签订《节能效益分享型》合同，其合同格式和内容，符合《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和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发布的《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GB/T24915-2010）等规定。  　　（六）自2012年1月1日起至2013年12月31日，注册在上海的企业从事离岸服务外包业务中提供的应税服务。  　　从事离岸服务外包业务，是指注册在上海的企业根据境外单位与其签订的委托合同，由本企业或其直接转包的企业为境外提供信息技术外包服务（ITO）、技术性业务流程外包服务（BPO）或技术性知识流程外包服务（KPO）。  　　（七）台湾航运公司从事海峡两岸海上直航业务在大陆取得的运输收入。  　　台湾航运公司，是指取得交通运输部颁发的“台湾海峡两岸间水路运输许可证”且该许可证上注明的公司登记地址在台湾的航运公司。  　　（八）台湾航空公司从事海峡两岸空中直航业务在大陆取得的运输收入。  　　台湾航空公司，是指取得中国民用航空局颁发的“经营许可”或依据《海峡两岸空运协议》和《海峡两岸空运补充协议》规定，批准经营两岸旅客、货物和邮件不定期（包机）运输业务，且公司登记地址在台湾的航空公司。  　　（九）美国ABS船级社在非营利宗旨不变、中国船级社在美国享受同等免税待遇的前提下，在中国境内提供的船检服务。  　　（十）随军家属就业。  　　1.为安置随军家属就业而新开办的企业，自领取税务登记证之日起，其提供的应税服务3年内免征增值税。  　　享受税收优惠政策的企业，随军家属必须占企业总人数的60%（含）以上，并有军（含）以上政治和后勤机关出具的证明。  　 2.从事个体经营的随军家属，自领取税务登记证之日起，其提供的应税服务3年内免征增值税。  　　随军家属必须有师以上政治机关出具的可以表明其身份的证明，但税务部门应当进行相应的审查认定。  　　主管税务机关在企业或个人享受免税期间，应当对此类企业进行年度检查，凡不符合条件的，取消其免税政策。  　　按照上述规定，每一名随军家属可以享受一次免税政策。  　　（十一）军队转业干部就业。  　　1．从事个体经营的军队转业干部，经主管税务机关批准，自领取税务登记证之日起，其提供的应税服务3年内免征增值税。  　　2．为安置自主择业的军队转业干部就业而新开办的企业，凡安置自主择业的军队转业干部占企业总人数60%（含）以上的，经主管税务机关批准，自领取税务登记证之日起，其提供的应税服务3年内免征增值税。  　　享受上述优惠政策的自主择业的军队转业干部必须持有师以上部队颁发的转业证件。  　　（十二）城镇退役士兵就业。  　　1．为安置自谋职业的城镇退役士兵就业而新办的服务型企业当年新安置自谋职业的城镇退役士兵达到职工总数30%以上，并与其签订1年以上期限劳动合同的，经县级以上民政部门认定、税务机关审核，其提供的应税服务（除广告服务外）3年内免征增值税。  　　2．自谋职业的城镇退役士兵从事个体经营的，自领取税务登记证之日起，其提供的应税服务（除广告服务外）3年内免征增值税。  　　新办的服务型企业，是指《国务院办公厅转发民政部等部门关于扶持城镇退役士兵自谋职业优惠政策意见的通知》（国办发[2004]10号）下发后新组建的企业。原有的企业合并、分立、改制、改组、扩建、搬迁、转产以及吸收新成员、改变领导或隶属关系、改变企业名称的，不能视为新办企业。  　　自谋职业的城镇退役士兵，是指符合城镇安置条件，并与安置地民政部门签订《退役士兵自谋职业协议书》，领取《城镇退役士兵自谋职业证》的士官和义务兵。  　　（十三）失业人员就业。  　　1．持《就业失业登记证》（注明“自主创业税收政策”或附着《高校毕业生自主创业证》）人员从事个体经营的，在3年内按照每户每年8000元为限额依次扣减其当年实际应缴纳的增值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和个人所得税。  　　试点纳税人年度应缴纳税款小于上述扣减限额的，以其实际缴纳的税款为限；大于上述扣减限额的，应当以上述扣减限额为限。  　　享受优惠政策的个体经营试点纳税人，是指提供《应税服务范围注释》服务（除广告服务外）的试点纳税人。  　　持《就业失业登记证》（注明“自主创业税收政策”或附着《高校毕业生自主创业证》）人员是指：（1）在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门公共就业服务机构登记失业半年以上的人员；（2）零就业家庭、享受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家庭劳动年龄内的登记失业人员；（3）毕业年度内高校毕业生。  　　高校毕业生，是指实施高等学历教育的普通高等学校、成人高等学校毕业的学生；毕业年度，是指毕业所在自然年，即1月1日至12月31日。  　　2．服务型企业（除广告服务外）在新增加的岗位中，当年新招用持《就业失业登记证》（注明“企业吸纳税收政策”）人员，与其签订1年以上期限劳动合同并依法缴纳社会保险费的，在3年内按照实际招用人数予以定额依次扣减增值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和企业所得税优惠。定额标准为每人每年4000元，可上下浮动20%，由试点地区省级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情况在此幅度内确定具体定额标准，并报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备案。  　　按照上述标准计算的税收扣减额应当在企业当年实际应缴纳的增值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和企业所得税税额中扣减，当年扣减不足的，不得结转下年使用。  　　持《就业失业登记证》（注明“企业吸纳税收政策”）人员是指：（1）国有企业下岗失业人员；（2）国有企业关闭破产需要安置的人员；（3）国有企业所办集体企业（即厂办大集体企业）下岗职工；（4）享受最低生活保障且失业1年以上的城镇其他登记失业人员。  　　服务型企业，是指从事原营业税“服务业”税目范围内业务的企业。  　　国有企业所办集体企业（即厂办大集体企业），是指20世纪70、80年代，由国有企业批准或资助兴办的，以安置回城知识青年和国有企业职工子女就业为目的，主要向主办国有企业提供配套产品或劳务服务，在工商行政机关登记注册为集体所有制的企业。厂办大集体企业下岗职工包括在国有企业混岗工作的集体企业下岗职工。  　　3．享受上述优惠政策的人员按照下列规定申领《就业失业登记证》、《高校毕业生自主创业证》等凭证：  　　（1）按照《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28号）第六十三条的规定，在法定劳动年龄内，有劳动能力，有就业要求，处于无业状态的城镇常住人员，在公共就业服务机构进行失业登记，申领《就业失业登记证》。其中，农村进城务工人员和其他非本地户籍人员在常住地稳定就业满6个月的，失业后可以在常住地登记。  　　（2）零就业家庭凭社区出具的证明，城镇低保家庭凭低保证明，在公共就业服务机构登记失业，申领《就业失业登记证》。  　　（3）毕业年度内高校毕业生在校期间凭学校出具的相关证明，经学校所在地省级教育行政部门核实认定，取得《高校毕业生自主创业证》（仅在毕业年度适用），并向创业地公共就业服务机构申请取得《就业失业登记证》；高校毕业生离校后直接向创业地公共就业服务机构申领《就业失业登记证》。  　　（4）服务型企业招录的人员，在公共就业服务机构申领《就业失业登记证》。  　　（5）《再就业优惠证》不再发放，原持证人员应当到公共就业服务机构换发《就业失业登记证》。正在享受下岗失业人员再就业税收优惠政策的原持证人员，继续享受原税收优惠政策至期满为止。  　　（6）上述人员申领相关凭证后，由就业和创业地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门对人员范围、就业失业状态、已享受政策情况审核认定，在《就业失业登记证》上注明“自主创业税收政策”或“企业吸纳税收政策”字样，同时符合自主创业和企业吸纳税收政策条件的，可同时加注；主管税务机关在《就业失业登记证》上加盖戳记，注明减免税所属时间。  　　4．上述税收优惠政策的审批期限为2011年1月1日至2013年12月31日，以试点纳税人到税务机关办理减免税手续之日起作为优惠政策起始时间。税收优惠政策在2013年12月31日未执行到期的，可继续享受至3年期满为止。  　　二、下列项目实行增值税即征即退  　　（一）注册在洋山保税港区内试点纳税人提供的国内货物运输服务、仓储服务和装卸搬运服务。  　　（二）安置残疾人的单位，实行由税务机关按照单位实际安置残疾人的人数，限额即征即退增值税的办法。  　　上述政策仅适用于从事原营业税“服务业”税目（广告服务除外）范围内业务取得的收入占其增值税和营业税业务合计收入的比例达到50%的单位。  　　有关享受增值税优惠政策单位的条件、定义、管理要求等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残疾人就业税收优惠政策的通知》（财税[2007]92号）中有关规定执行。  　　（三）试点纳税人中的一般纳税人提供管道运输服务，对其增值税实际税负超过3%的部分实行增值税即征即退政策。  　　（四）经人民银行、银监会、商务部批准经营融资租赁业务的试点纳税人中的一般纳税人提供有形动产融资租赁服务，对其增值税实际税负超过3%的部分实行增值税即征即退政策。  　　三、2011年12月31日（含）前，如果试点纳税人已经按照有关政策规定享受了营业税税收优惠，在剩余税收优惠政策期限内，按照本办法规定享受有关增值税优惠。 |